

## 司法試驗制度 및 새 公務員任用試驗令에 대한 檢討와 批判

姜 求 眞\*

### Ⅰ. 司法試驗制度의 檢討

司法試驗制度에 관하여 本格的으로 論議하자면, 한편으로는 大學法學教育의 方向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法曹養成의 觀點에서 根本的인 檢討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根本的인 檢討는 此後의 課題로 미루고 本稿에서는 극히 實踐的이고도 技術的이라고 할 수 있는 問題에 限定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 1. 試驗應試資格 制限의 問題

(1) 試驗應試資格을 制限하지 아니한 것은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다루는 試驗合格者들의 莫重한 使命에 비추어 醫師, 藥師, 看護員들의 資格試驗에 學歷制限을 둔 것과 均衡이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試驗應試資格을 最少限 公認된 法科大學 卒業豫定者(내지 6학기 修了者)로 制限하여야 한다. 法科大學을 卒業할 豫定에 있지 못한 자는 法科大學 卒業資格 檢定考試制度를 新設하여 이 檢定考試에 合格함으로써, 應試할 수 있게 한다.

(2) 만약 (1)과 같은 應試資格制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法科大學 教育의 正常化 내지 法科大學의 올바른 育成을 위한 方案으로서, 次善策이긴 하지만, 法科大學 卒業豫定者 내지 卒業者에 대한 第1次試驗의 免除를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3) 國家人力の 適切한 管理의 側面에서<sup>(1)</sup> 司法試驗에 대한 無制限한 應試를 되도록 抑止하는 方案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試驗應試回數의 制限 내지 應試年齡의 制限<sup>(2)</sup>이 檢討되어야 할 뿐 아니라, 試驗管理의 側面에서도 不合格者에게 試驗點數 및 석차 등을 알려줌으로써 合格의 可望이 없는 應試生들로 하여금 試驗에의 繼續的 應試를 抛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教授

(1) 1981. 7. 27. 자 法律新聞은 “司法落榜生은 어디로”라는 題下에 “1649年 이래 延應試人員 10萬명 苦杯 高等失業者로 轉落·社會的不滿要素”로 되기도 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2)-1 이와 관련하여 1981. 5. 14. 부터 施行된 外務公務員任用令 제10조가 外務高等考試에 응시할 수 있는 者의 年齡을 20歲이상 32歲미만으로 制限하였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棄케 하는 등의 措置를 取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2. 合格者數의 調整 問題

現行司法試驗은 그에 선행하는 과거의 高等考試라든가 美軍政下에서의 辯護士試驗制度 또는 그에 先行해서 日政時의 高等考試令에 依한 高等考試 司法科制度 또는 日帝時 우리나라에 있었던 朝鮮辯護士試驗規則에 의한 辯護士試驗 등을 改善하고 日本의 司法試驗制度를 大幅의으로 參酌해서 이루어진 制度인 만큼 그 制度自體가 根本的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만 過去 司法試驗을 施行한 實踐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合格者 數의 不均衡이 현저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sup>(2)</sup> 뿐만 아니라 無醫村만큼 無辯護士村(現在 地方法院支院의 管轄 區域안에 辯護士가 전혀 常住하지 않는 곳이 있음)의 解消가 國民의 憲法上의 權利인 辯護士의 助力를 받을 權利에 비추어 더욱 時急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見地에서 最近 試驗 合格者數를 大幅 늘이는 傾向이 보이는 것은 歡迎할 만한 일이지만, 司法書士 등과 같은 準法曹人制度(2)를 破行的으로 存置·維持하면서 司試驗合格者를 무작정 늘이는 것은 再考할 餘地가 있다고 본다. 요컨대 法學教育과의 연계성하에 法曹人資格을 一元化하는 問題와 아울러, 合理的인 法曹人 需給計劃下에 司試驗合格者數를 決定하여야 한다고 본다.

## 3. 司法試驗 管掌機關의 問題

司法試驗의 施行 管掌權이 現在에 있어서는 總務處長官에 있으나 法曹人口의 調整의 원활화와 權力分立的 要請으로 이를 大法院(法院行政處)에 移管하는 問題를 合理的으로 檢討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司法研修院이 大法院 傘下機關이라는 點도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現行司法試驗令上 試驗委員會가 設置되어 있으나, 그 機能을 強化하고 司試驗의 管理 및 그 改善을 恒久的으로 研究하기 위하여서는 法曹實務와 學界를 망라한 司法試驗管理 및 改善委員會를 常設機構로서 設置하고 同委員會에 司法試驗施行에 必要한 規則制定權 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 4. 試驗科目 調整의 問題

試驗科目의 數가 너무나 過多하여 法科大學에서의 法學教育이 試驗科目 위주로 運營됨으로써, 法曹人의 養成에 必須의인 폭 넓은 法學教育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선 一次 試驗科目에 있어서는 특히 英語 등을 試驗科目으로 부과하는 데 대하여 問題點 내지 論難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問題의 일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컨대 月刊考試 1981年 9月號 248面 “獨語特講을 시작하며”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第23回 司試부터 合格者數가 三百名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一次만 合格하

(2) 이에 관하여는 [表 1] 참조

(2)-1 大韓司法書士協會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1981. 12. 1. 현재 全國에서 개업중인 司法書士의 숫자는 1,826名(定員은 1,905명)이다.

면 二次는 과락이 없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合格할 수 있기 때문에 一次의 重要性은 倍加된 느낌이다. 더구나 第23回의 경우 一次 合格者數가 二次 合格豫定人員의 2.5倍 정도에 불과하여 一次는 오히려 어려워진 셈이다. 특히 오래 공부하여 法科目에 實力있는 분들이 一次에서 거듭 失敗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一次에서 많이 失敗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역시 外國語 때문이다. 英·獨·佛·中·日語의 다섯 가지에서 선택하는 데 각 과목간에 難易度가 너무 차이가 나므로 그 선택에 慎重을 기해야 한다.

〈表〉 科目別 最大頻度點數

	英	獨	佛	中	日
17回 司試	45	65	62.5	67.5	72.5
18回 //	72.5	77.5	60	52.5	60
19回 //	52.5	77.5	67.5	42.5	55
22回 //	45	67.5	65	62.5	70
40點 以上	1,120(人)	888	172	33	39
應 試 者	4,280(人)	1,302	263	198	113

(總務處가 提供하는 資料에서는 어느 한 科目이라도 과락이 있으면 除外했으므로 그 資料만의 平均點數는 그 信賴度가 적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이 獲得한 點數가 比較의 尺度로 알맞다. 20回以後의 資料가 없는 것은 20回때 英語平均이 40點 未滿이라서 그렇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이다.)

가장 많은 應試者가 選擇한 英語의 점수가 獨語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一次는 平均 1點에 백여명이 걸러있는 데 外國語에서 2점 以上이나 差異가 난다는 것이다. 中·日語는 每年 그 水準이 심한 差異가 나므로 믿을 수 없고 佛語는 獨學하는 데 어려움이 다르므로 獨語가 가장 무난하다. 더구나 그 文法이 法學에 버금갈 정도로 論理的이므로 法學을 공부하는 사람은 오히려 接近하기 쉽다. 그러므로 英語때문에 一次에서 계속 失敗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獨語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한다." 뿐만 아니라 1次 試驗科目의 必須로 되어있는 國史, 經濟學概論, 文化史 등도 問題이다.

특히 國史는 高等考試 司法科時節에 試驗科目으로서 論難이 많았던 까닭에 일단 廢止되었던 것인데, 다시 復活된 데에 合理的 理由가 있는 것인지 疑心스럽다. 어쨌든 1次試驗도 司法試驗의 一部로서 判事 등의 法曹人이 되려는 者에게 必要한 學識과 能力을 점검하기 위한 것인 이상, 그 目的을 넘어서 단순히 2次試驗의 論文型 應試者가 多數일 경우에 나타나는 試驗委員들의 勞苦를 덜기 위한 便宜의 스크리닝(screening) 方案으로서 轉落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2次試驗의 採點에 問題가 있다면 試驗委員을 大幅 늘리는 方途가 바람직하다.

만약 現行 1次試驗科目을 그대로 維持하는 경우에는, 위 1의 應試資格制限論議와 관련된 것이지만, 法科大學 卒業豫定者에게는 憲法, 民法, 刑法의 세 과목만 과하고 그 이외의 科目은 免除하는 方案도 研究할 만하다고 본다.

2次試驗에 있어서는 7法科目中 現在에 있어서 事實上 出題되고 있지 않은 分野, 예컨대 民法에 있어서 親族·相續法, 商法에 있어서 保險·海商編, 民事訴訟法에 있어서 強制執行法 등을 法的으로 除外하는 問題가 論議된다.<sup>(3)</sup>

그리고 第2次試驗은 論文型으로 과하도록 되어 있어 第1次의 選擇型 또는 記入型과 相異하다. 즉 주어진 問題에 대하여 우선 自己로서는 어떠한 視覺에서 接近(approach)할 것인가, 다음으로서는 그와 같은 接近을 통하여 接近된 問題는 基本的으로 또 具體的으로 어떠한 “法律的”論點이 있는 지를 指摘하고 그와 같은 諸論點을 體系的으로 整理하고 論理的으로 展開하여, 그리고 自己의 主體的 立場에서 그 검토의 結果로서 어떠한 結論을 導出하는 試驗方法으로써 法曹人이 되는데 必要한 學識應用能力, 理解力, 推理力, 判斷力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第2次 試驗科目으로서 國民倫理가 妥當한 것인지에 대한 慎重한 檢討가 要請된다.<sup>(4)</sup>

## II. 새 公務員任用試驗令에 대한 批判

政府는 1981. 11. 23. 公務員 任用試驗令中 改正令(大統領令제10,635號)을 公布함으로써 그동안 論難의 對象이 되어 오던 이른바 行政高試 試驗科目에 대한 改編을 斷行하였다.<sup>(5)</sup> 이번의 改正令에 의하면 종전의 英語, 國史, 民法總則, 財政學의 1次試驗科目(客觀式)을 <別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英語, 韓國史, 憲法, 民法總則의 네 共通科目과 各職類別 科目으로서 行政學概論 등 다섯科目으로 變更 調整하고 2次試驗科目(論文型)으로서는 <別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改正前의 必須 5科目과 選擇 2科目을 一般行政, 財經, 教育, 社會의 네職類別로 國民倫理, 經濟學, 行政法, 行政學의 네 共通科目과 各 世 專門科目으로 改正하는 內容을 그 骨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改正令을 改正前의 行政高等考試 科目과 對比할때 1次 시험과목은 現行大學의

(3) 日本에서는 司法試驗 第2次試驗의 試驗科目의 範圍를 定하는 規則(昭和 36年 司法試驗管理委員會 規則 第2號)에 의하여 商法에서는 保險, 海商을 民訴에서는 強制執行, 公示催告節次, 仲裁節次를 각 그 시험범위에서 除外하고 있다. 日本의 司法科目에 대하여는 [表 3] 참조

(4) 現行司法試驗科目에 관하여는 [表 2] 참조

(5) 총무처가 밝힌 改編趣旨는 다음과 같다.

“現行 行政高等考試는 專門分野別 區分없이 單一職으로 施行하고 있으나, 이를 “一般行政” “財經” “教育” “社會”分野로 細分하여 募集함으로써, 專門化되어가는 行政需要에 副應하고, 試驗科目과 大學敎科目的 連繫性을 強化하여 大學에서 專功分野를 扎实히 공부한 사람이 高試合格에 有利하도록 함으로써, 試驗準備로 學校講義와 學校生活를 疎忽히 하는 弊端을 막고, 大學敎育의 正常化에 寄與하는 同時에, 많은 教育投資로 길러낸 專門分野別 高級頭腦을 國家의 中堅 公務員으로 積極 誘致하기 위하여 現行 行政高試科目을 改編하기로 하였음.

※ 學歷制限, 應試學科制限, 大學成績의 反映 等 試驗과 大學敎育을 直接 連繫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問題點이 따르므로 現段階로서는 時機尙早로 보고 現行 學歷制限 不認定을 先제로 試驗科目만 改編하기로 하였음.”

教科目中에서 行政公務員의 養成과 連繫性이 있는 分野의 基本科目을 共通試驗科目으로 하고 專門分野에 따른 基礎知識의 시험을 배려한 것으로 본다.

2次試驗科目中 共通 4科目에 있어서는 改正前 必須 5科目에서 憲法이 삭제되는 대신 一般行政이나 財經등에서 專門必須로 政治學·財政學 등이 導入되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하여 專門選擇에 있어서 現行 제1選擇인 國際法, 商法, 勞動法 등의 法律科目이 各職類別로 다른 많은 과목이 있는 選擇科目으로 전락되었으며 특히 行政高試의 백미라 할 수 있는 一般行政職分野에 行政學系列의 科目이 대폭 추가 偏重되어 있는 점이 改正前制度和 큰 差異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教育制度나 國家試驗制度에 관하여는 그 觀點이나 理論의 差異에 따라 見解를 달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我田引水格의 偏向된 見地에서 制度를 改編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할 일로 믿는다. 이번 行政高等考試의 개편만 하더라도 客觀性과 合理性에 最大限 덕잡은 國家百年大計를 위해 조금도 손색없는 것이어야 함은 어느 누구도 異論을 提起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번 改正令에 따른 行政高試科目의 改編이 과연 우리 社會와 國家發展의 중추적 役割을 담당할 高級行政人力의 選拔에 適合하도록 짜여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行政의 遂行過程에 있어서 行政의 目的達成이나 福利增進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公務員이 적어도 法律에 違反되지 않는 行政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法治主義와 法の 支配의 根本을 이루는 法律에 의한 行政, 法治行政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行政을 遂行하는 公務員의 法の 解釋·運用에 관한 知識과 素養이 必須的이 아닐 수 없고 적어도 違法한 行政만이라도 피하여야겠다는 立場에서는 무엇이 法律에 의하여 禁止되었거나 許容되었는 지를 당해 公務員이 알아야 한다는 것은 基本的 前提가 아닐 수 없다.

이제까지의 高等考試科目에 있어서 法律基本科目의 比重이 全他科目에 비하여 낮아왔던 관계로 현재 行政公務員들의 法律素養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부질없는 우려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이른바 行政指導의 濫發이라든가, 國家 또는 行政廳이 當事者가 된 訴訟에서 國家敗訴率이 상당히 높다(國家當事者訴訟에 있어 1980년의 경우 37.5%나 된다)는 事實은 違法한 行政내지는 行政公務員의 法律素養不足과 因果關係는 없는 것인지? 國家敗訴率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법한 行政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論理도 되는데 이것은 국가공무원은 法律解釋能力과도 無關한 것이 아닌 지도 모른다.

이러한 這問의 事情을 十分 窺知하여 試驗科目도 法治行政을 遂行할 能力과 資質이라는 基礎위에서 選定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行政考試科目에 있어서 法律科目은 一次試驗에 民法總則, 2次試驗의 必須科目으로서 憲法 및 行政法, 選擇科目으로서 國際法, 商法, 勞動法の 6個科目이던 것을 改正令에 있어서는 一次試驗에 憲法 및 民法總則 2次試驗의 4

個職類 共通科目으로서 行政法, 專門別必須科目으로서 法律科目은 하나도 없고, 選擇科目으로서 一般行政職에 民法와 國際法, 財經職에 商法, 社會職에 勞動法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이 과연 妥當한 것인가?

또한 試驗科目은 大學敎科目과 連繫되어야 하는데 改正案의 試驗科目은 一般行政分野에 있어서는 서울大學校의 敎科課程에 비추어 볼 때 거의가 特殊大學院인 行政大學院의 敎科目이며, 教育分野의 科目은 敎師養成이 目的인 師範大學의 敎科目이며 결코 文教行政을 擔當할 公務員의 資質을 試驗하는 科目이 아니다. 또한 財經·社會의 경우에도 同一한 理由에서 不合理한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改正令의 試驗科目數는 總36個 科目인데 그중 法律科目이 8個 科目(22.2%)밖에 안된다는 것을 法律을 工夫한 法科大學出身의 卒業生에 대하여 行政府에 일할 수 있는 選擇의 기회와 可能性을 剝奪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解放後 英美法 思潮가 많이 들어왔다고는 하나 根本的으로 成文法主義의 유럽大陸法系의 血統을 받은 國法秩序를 유지하고 있고 모든 國權의 發動이 大陸法的인 法的形式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行政權에 의한 委任立法의 範圍가 날로 擴大되고 個人의 權利救濟體系가 정비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行政官의 資質中에서 가장 많이 要求되는 것이 法律素養인 것이다. 따라서 法의 支配를 자랑하는 英美의 경우는 勿論이요, 西獨에서도 1·2次 國家試驗에 合格한 者中에서 司法官뿐만 아니라 行政官이 任命되게 되고, 그 경우 合格者의 大部分이 法科出身이며, 프랑스의 엘리트 官僚코스인 國立行政學校(略稱 EUA) 出身들의 基本素養이 法律知識으로 되어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러한 根據이래 過去施行되어오던 高等高試令(1949年 公布 1957年 當時)에 있어서도 總 24個 科目中 1—4部 法律必須科目은 憲法, 行政法, 民法 및 國際公法, 法律選擇科目으로서는 1部에는 刑法 및 國際公法, 2部에는 民法, 商法, 3部에 國際私法의 9個科目(27.3%)이었다. 또한 日本의 國家公務員採用 上級試驗의 경우에는 法律科目만 보더라도 行政職에 憲法, 行政法, 民法, 法律職에 憲法, 行政法, 民法, 商法, 刑法 및 勞動法이 있으며 經濟職에 있어서는 憲法, 民法, 商法으로 되어있으므로 專門試驗科目 總27個 科目中 12科目(44.4%)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놓고 볼 때 改正令의 內容이 특히 一般行政職分野에 있어서는 行政學을 工夫한 學生들에게 不當하게 有利하게 되고 法學을 工夫한 學生에게 極히 不利하게 되는 狀況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대답이 너무나 自明한 것이다.

우리나라 法學教育은 行政府에서 勤務할 公務員의 養成도 目標로 하는 것인데 이번의 改正令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法學教育의 目的의 하나를 喪失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게 될 것이다. 行政學은 그 母國인 美國에서 學部에서의 法學, 經濟學, 財政學, 醫學, 工學 其他 專攻分野의 履修를 끝낸 사람에게 企業이나 政府의 行政管理技術을 익히는 大學院過程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行政學과 行政事務 등은 中央行政研修院에서 공부하면 족하리라 보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論據로써 이번에 公布된 改正令에 대하여는 時急한 檢討와 研究가 다시 始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表 1〉 高等考試(司法科) 및 司法試驗料行統計

시행년도	회수	應施者數	合格者數	比率(%)	합격자누계
1949	1	625	16	2.6	16
1951	2	457	39	8.5	55
1952	3	258	21	8.1	76
1953	4	711	16	2.4	92
1953	5	842	12	1.4	104
1954	6	1,141	17	1.5	121
1955	7	1,999	30	1.5	151
1956	8	2,855	108	3.8	259
1957	9	3,414	51	1.5	310
1958	10	3,047	50	1.6	360
1959	11	3,416	24	0.7	384
1960	12	5,557	31	0.6	415
1961	13	4,450	110	2.5	525
1962	14	3,036	50	1.7	575
1962	15	3,825	56	1.5	631
1963	16	3,194	36	1.1	667

司法試驗 向別合格者數 일람표

시행년도	구분 回別	出願者數	第 1 次 試 驗		第 2 次 試 驗			最終合格比率(%)	
			合格者數	合格點	應試者數	合格者數	合 格 者 數	出 願 者 數	第 2 次 試 驗 應 試 者 比
						累 計	對 比	對 比	
1963	1	4,176(466)	1,471	60	2,115	41	708	0.98	1.94
1963	2	3,732(1,325)	1,205	60	2,530	45	753	1.20	1.77
1964	3	4,969(1,067)	781	80	1,848	10	763	0.20	0.54
1964	4	4,214(725)	461	80	1,186	22	785	0.52	1.85
1965	5	2,141	475	75	408	16	801	0.75	3.92
1966	6	2,370(423)	470	70	756	19	820	0.80	3.39
1967	7	2,820(430)	491	77	835	5	825	0.98	0.60
1967	8	2,466(461)	473	74	779	83	908	3.37	10.66
1968	9	2,599(396)	447	76	736	37	945	1.42	5.04
1969	10	2,873(372)	629	76	750	34	979	1.18	3.33
1970	11	2,561(511)	520	77	930	33	1,012	1.28	3.54
1970	12	2,786(408)	762	72	944	50	1,062	1.56	5.29
1971	13	2,776(709)	420	80	962	80	1,142	2.29	8.27
1972	14	3,514(377)	577	80	829	80	1,222	2.05	9.65

1973	15	4,072(503)	430	75	787	60	1,286	1.31	7.62
1974	16	4,010(376)	498	79	705	60	1,346	1.46	8.51
1975	17	4,119(452)	424	77	747	60	1,406	1.45	8.03
1976	18	4,498(376)	405	77	653	60	1,466	1.33	9.18
1977	19	4,767(366)	541	79	801	80	1,546	1.67	9.98
1978	20	5,387(488)	521	80	912	100	1,646	1.86	10.96
1979	21	5,788(479)	564	74.06	929	120	1,766	2.07	12.91
1980	22	6,658(502)	575	73.43	986	141	1,907	2.11	14.30
1981	23	7,983(523)	785	77.18	1,227	316	2,223		

( )안은 1차 시험 면제자(전회 1차합격자)

〈表 2〉 司法試驗科目表(1980.12.18. 改正現在)

第 1 次 試 驗 科 目 (8)			第 2 次 筆記試驗科目 (8)
必須科目 (6)	選 擇 案 目		
	第 1 選 擇 (1)	第 2 選 擇 (1)	
國 史 憲 法 民 法 刑 法 經濟學 概論 文 化 史	國 際 法 國 際 私 法 社 會 法 刑 事 政 策 (行刑學包含)	心 理 學 法 哲 學 政 治 學 社 會 學	國民 倫 理 憲 法 行 政 法 商 法 民 法 民 事 訴 訟 法 刑 法 刑 事 訴 訟 法
		外國語(英語·獨語·佛語· 日語·中國語中 擇一)	

〈表 3〉 日本 司法試驗科目表

單 答 式 試 驗 (3)	論 文 式 試 驗				
	必須科目 (4)	選 擇 科 目			
		第 1 選 擇 (1)	第 2 選 擇 (1)	第 3 選 擇 (1)	
憲 法 民 法 刑 法	憲 法 民 法 商 法 刑 法	民 訴 · 刑 訴 各 1 科 目	民 訴 · 刑 訴 行 政 法 · 破 產 經 濟 · 勞 動 法 · 國 際 公 法 · 國 際 私 法 · 刑 事 政 策 各 1 科 目(다만 民 訴 및 刑 訴 는 第 1 選 擇 中 選 擇 하 지 않 은 경 우 에 한 하 여 選 擇 할 수 있 다)	政 治 學 · 經 濟 原 論 · 財 政 學 · 會 計 學 · 心 理 學 · 經 濟 政 策 · 社 會 政 策 中 1 科 目	

〈表 4〉 行政高試 및 外務高試 科目表

〈行政高試〉

1次試驗(客觀式)

共 通 ④	一 般 行 政	財 經	教 育	社 會
	國史, 憲法, 民法總則, 英語	''	''	''
專 門 ④	行 政 學 概 論	經 濟 原 論	教 育 學 概 論	社 會 學 概 論

2次試驗(主觀式)

共 通 ④	一 般 行 政	財 經	教 育	社 會	
	國民倫理, 行政法, 行政學, 經濟學	''	''	''	
專 門 ③	必 須 ①	政 治 學	財 政 學	教 育 學	社 會 學
	選 擇 ②	民法(身分法除外), 調查方法論, 心理學	統計學, 會計學, 經營學	教育哲學, 教育心理學, 教育社會學	社會心理學, 社會調查論, 社會問題論
	選 擇 ②	政策學概論, 地方行政(都市行政包含)國際法	經濟政策, 商法貨幣金融論	社會教育學, 教育行政學, 教育課程	勞動法, 社會政策(社會福祉政策包含)社會福祉論

〈外務高試〉

1次試驗(客觀式)

現 行	改 正 案
文化史, 政治學, 英語, 國史	憲法, 政治學, 文化史, 英語, 國史

2次試驗(主觀式)

現 行	改 正 案
必 須 : 國民倫理, 憲法, 國際法 外交史, 英語, 經濟學, 第 2 外國語 選 擇 : 國際政治學, 國際私法 ① 行政法, 行政學, 民法總則	必 須 : 國民倫理, 國際法, 英語, 第 2 外國語 ⑤ 國際政治學(外交史包含) 選 擇 : 國際私法, 民法總則 ① 行政法, 行政學

〈行政職 昇進試驗〉

1次試驗(客觀式)

現 行	改 正 案
國史, 憲法	行政法, 憲法

2次試驗(主觀式)

各部處別로 業務 內容과 연관성이 깊은 2科目(文敎部 : 行政學, 教育學, 勞動部 : 勞動法, 經濟原論, 國稅廳 : 會計學, 租稅論 등)

〈表 5〉 日本國家上級 및 地方上級行試驗의 內容

## ○ 國家公務員採用上級試驗의 構成

試 驗	種 目	內 容
第 一 次	教 養 試 驗 (擇一式)	一般的 知識および 知能に ついて의 筆記試驗(3時間)
	專 門 試 驗 I (擇一式)	各 試驗의 區分に應じて必要な 專門的知識, 技術などの能力に ついて의 筆記試驗(I=3時間, II=3時間)
第 二 次	專 門 試 驗 II (記述式)	
	總 合 試 驗 —甲種のみ—	總合的な 判斷力, 思考力 などの 筆記試驗(2時間半)
	人 物 試 驗	人柄などについて 個別面接

## ○ 專門試驗의 出題分野(甲, 乙種共通)

試 驗 區 分	專 門 試 驗 科 目 (*印記述式)
行 政	政治學米, 行政學米, 憲法米, 行政法, 民法, 社會政策米, 經濟學, 財政學, 國際 關係(記述式は米印 4科目と 經濟原論の 5科目のらち 3科目 選擇)
法 律	憲法米, 行政法米, 民法米, 商法, 刑法, 勞動法, 經濟學, 財政學
經 濟	經濟原論米, 經濟學史, 財政學米, 經濟史, 經濟政策米, 經濟事情, 統計學, 憲法 民法, 商法

## ○ 地方公務員採用上級試驗(行政)의 構成

試 驗	種 目	內 容
第 一 次	教 養 試 驗 (擇一式)	一般教養について的筆記試驗(2時間)
	專 門 試 驗 I (擇一式)	一般行政事務に 必要な專門知識について的筆記試驗 (I=2時 間, II=2時間)
	專 門 試 驗 II (記述式)	
第 二 次	人 物 試 驗	人柄, 性向などについて的個別面接

## ○ 專門試驗의 出題分野

試 驗	專 門 試 驗 科 目
專 門 試 驗 I	憲法, 行政法, 民法, 勞動法, 經濟原論, 經濟史, 經濟政策, 財政學, 政治學, 行 政學, 社會政策, 刑法, 商法
專 門 試 驗 II	憲法, 行政法, 民法, 經濟原論, 經濟政策, 財政學, 政治學, 以上から 2分野を選擇